



[2013.1.8] [1003 , 2013.1.8,]

가 () 02 - 2020 - 5254

1 () 「 」

[2009.9.9]

2 () 「 」 (" ") 4

(烏石)

(奉安)

가 2.5

, 13

, 가 10

, 27

, 6

4

(影幀)

, 가 30

, 40

1

3

(" ")

[2009.9.9]

3 () 「 」 (" ") 11

(.)

1

(.)

(.)

(.)

1.

.

(2

) 1

2.

5

1

1

.

.

:

.

1

3.

5

1

1

.

.

:

(

) 1

4.

5

1

1

가

.

:

(

)

1

5.

: (改葬)

1

1

6.

:가

1 ,

1

7.

5

1

:

1

1

「 」 36

1

(5 1 1 .)

)

.< 2010.6.10>

5

3

12

1

2

()

(

)

.< 2011.11.2>

1.

1

2.가

1

3. (2) 1

4. 1 1 ()

3 ()

[2009.9.9]

4 () 14 3 1

[2009.9.9]

5 () 12 1 14 5
2

[2009.9.9]

6 () 16 4 , (奉安名牌)

3

[2009.9.9]

7 () 17 3 4 ,

[2009.9.9]

8 ()

4 ()

[2009.9.9]

9 () 18 1 , 5
(位牌紙)

1

18

5

[2009.9.9]

10 () 24 6

[2009.9.9]

11 ()

1

7

[2009.9.9]

< 804 ,2006.2.20 >

1 ()

2 () 3

5

3 ()

4 () 「 」, 「 4·19
」 「 5·18 」 ,

5 ()

9 "()" "()" , 1 " " "
" , " " " " , 2 " " " " , 3 "
" " " , 4 " " " " " " " " .

6 () 4·19 5·18

< 814 ,2006.6.30>()

()

() ,

< 910 ,2009.9.9>

< 924 ,2010.6.10>

< 964 ,2011.11.2>

2011 11 5

< 1003 ,2013.1.8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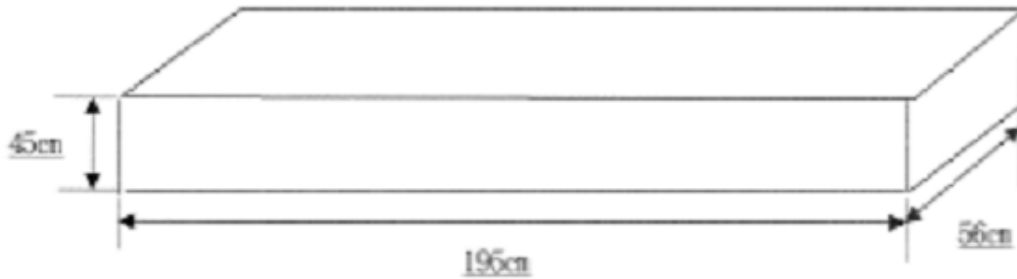
1 ()

2 () 2 2 가 3)) 3 2)
3 3

3 () 3 2 3
1

[별표 1] <개정 2009.9.9>

관의 규격 및 재질(제4조 관련)



1. 관의 크기는 가로 195cm, 세로 56cm, 높이 45cm를 원칙으로 하되, 신체적 조건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.
2. 관은 미송판 또는 육송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.
3. 송판의 두께는 3cm 이상으로 한다.
4. 송판은 4피로 조립한다.
5. 관의 상판에는 검은색으로 고인의 소속·계급과 “○○○의 靈”이라는 글씨를 기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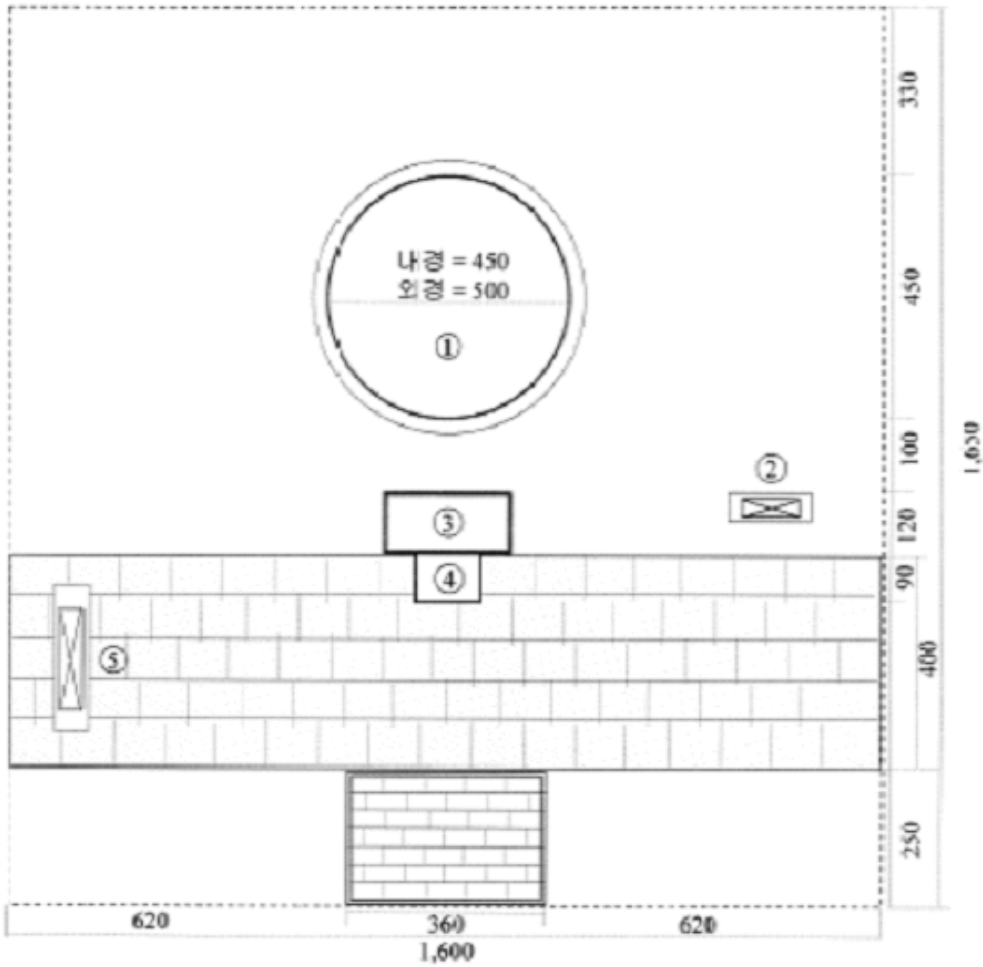
[별표 2] <개정 2013.1.8>

묘 및 묘비 등 부속구조물의 배치·종류 및 규격 (제5조 관련)

1.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묘

가. 묘 및 부속구조물의 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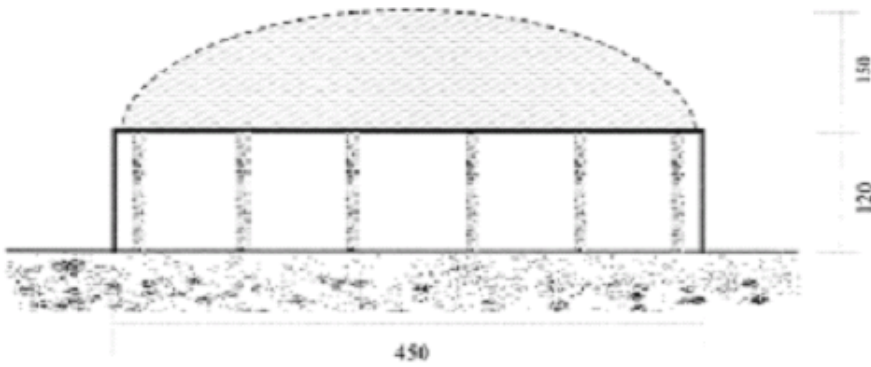
(단위: cm)



- ※ ① 봉분(원형) 및 묘두로움돌
- ② 묘비
- ③ 상석
- ④ 향로대
- ⑤ 추모비

나. 묘두로움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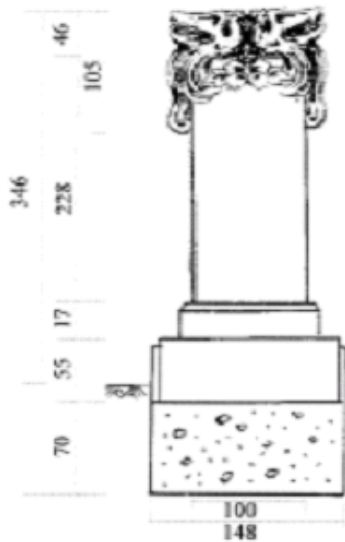
(단위: cm)



※ 보두름돌은 애석(艾石)을 사용하고, 12개의 판석으로 원형 봉분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.

다. 묘비

(단위: cm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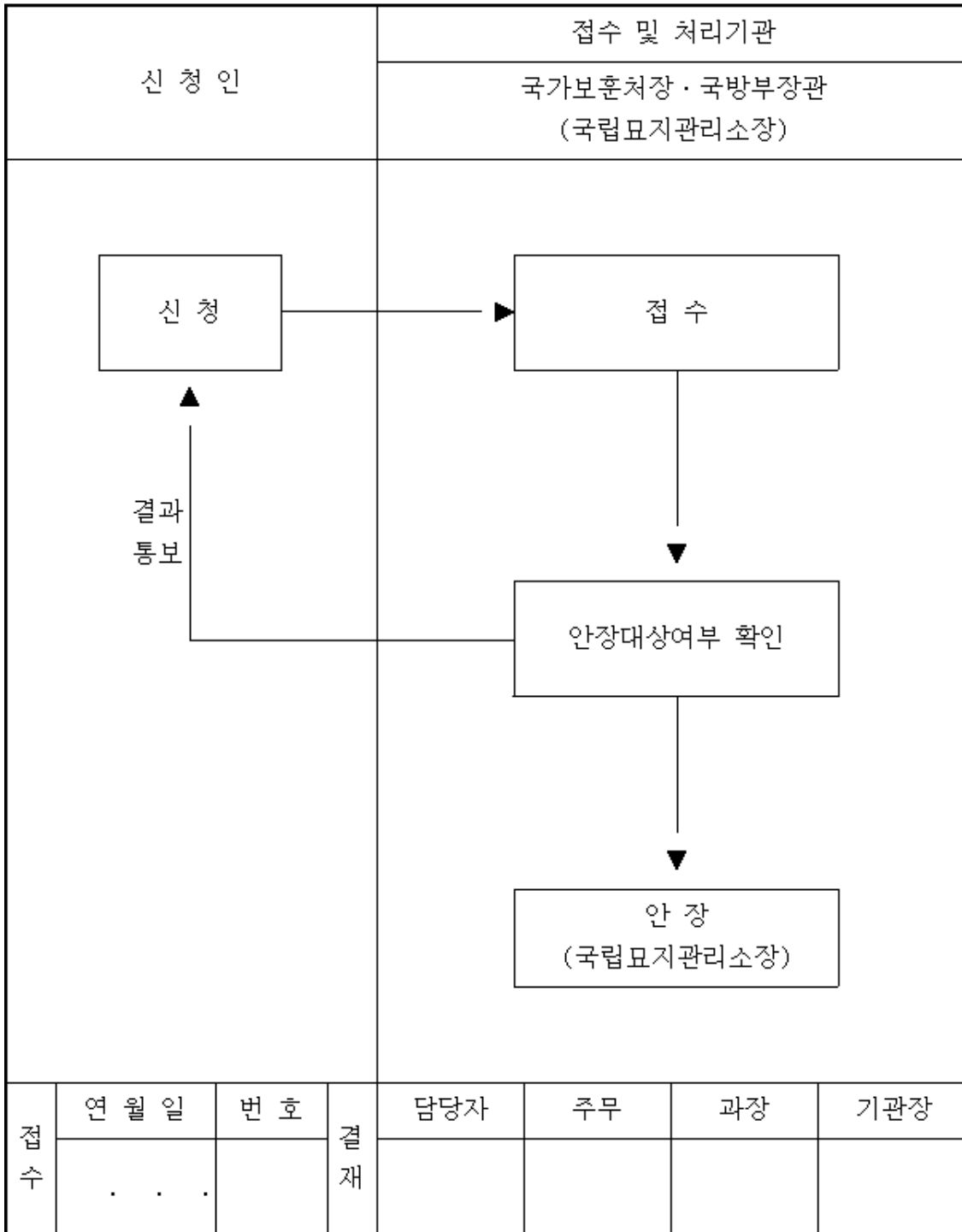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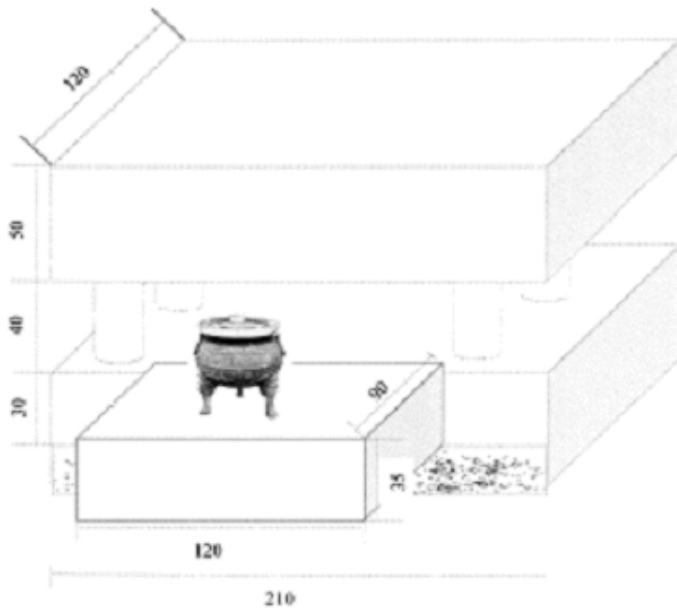
- 1) 묘비는 오석(烏石)을 사용하되, 앞면에는 "제○대 대통령 ○○○의 묘" 라는 글씨를 가로·세로 각각 20cm 내외의 크기로 묘비의 크기와 균형을 이루도록 새긴다.
- 2) 묘비 뒷면에는 안장자의 출생일·출생지, 사망일·사망지 및 사망구분을 새기고, 왼쪽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기며, 오른쪽에는 안장자의 주요 공적 및 경력을 새긴다.
- 3) 묘비 상부에는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무늬를 화강석으로 조각한다.

라. 상석 및 향로대

(단위: cm)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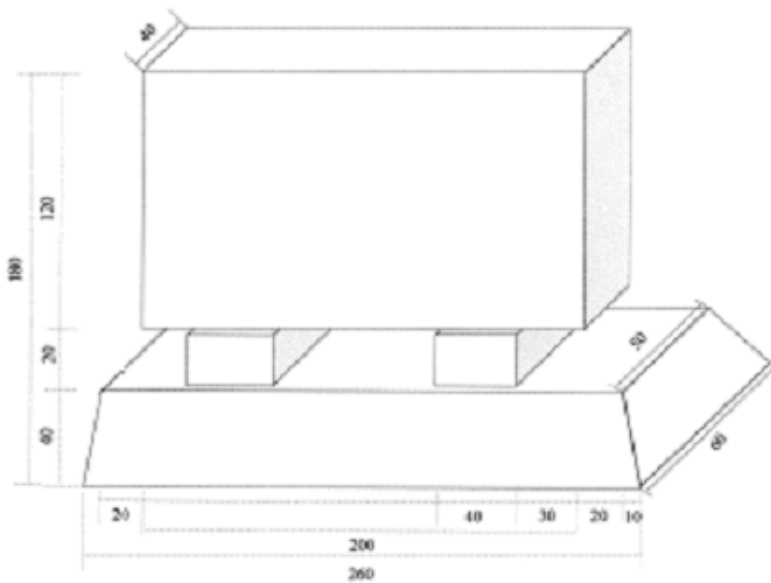




※ 상석과 상석기둥 및 향로대는 애석으로 하고, 상석의 바닥판은 화강석으로 한다.

마. 추모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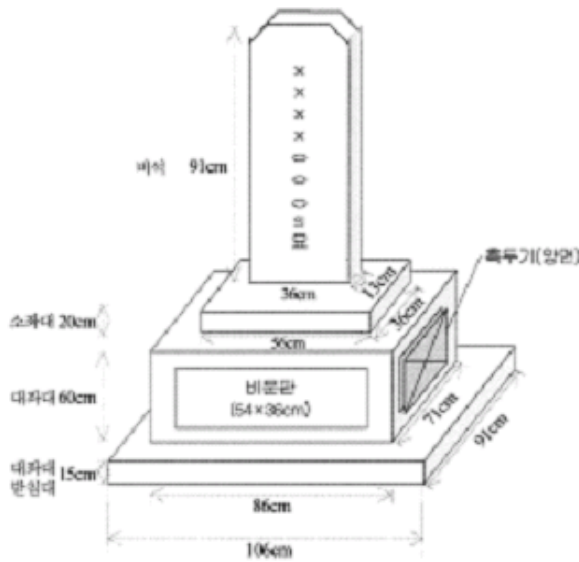
(단위: cm)



※ 판석은 오석으로 하고, 비문석 받침과 바닥석은 화강석으로 한다.

2. 법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묘

가. 묘비의 규격 및 재질 등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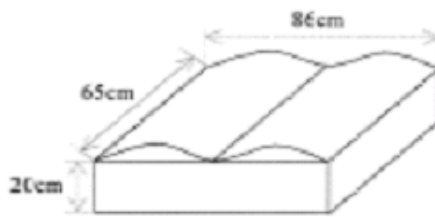
- 1) 묘비는 상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앞쪽·뒤쪽 또는 오른쪽 중 국립묘지관리소장이 정하는 위치에 설치한다.
- 2) 재질: 비문판은 오석으로 하고, 그 밖의 것은 화강석으로 한다.
- 3)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.
 - 가) 앞면: 안장자의 신분(계급)과 성명을 새기고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"배위 ○○○" 또는 "부군 ○○○"라고 새긴다.
 - 나) 뒷면: 묘지번호, 안장자의 출생일·출생지, 사망일·사망지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, 배우자를 합장한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한 줄로 "배위" 또는 "부군"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새긴다.
- 4) 대좌대 앞면에는 추모의 글을 새기고, 뒷면에는 안장자의 공적사항과 수훈내용 및 가족사항을 새긴다.

나. 상석

1) 상석(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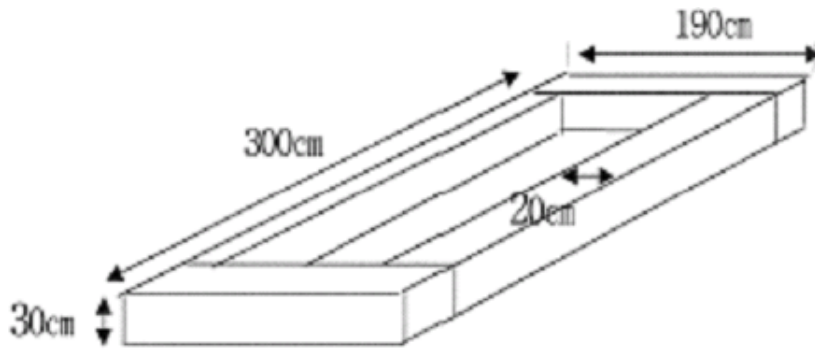


2) 상석(나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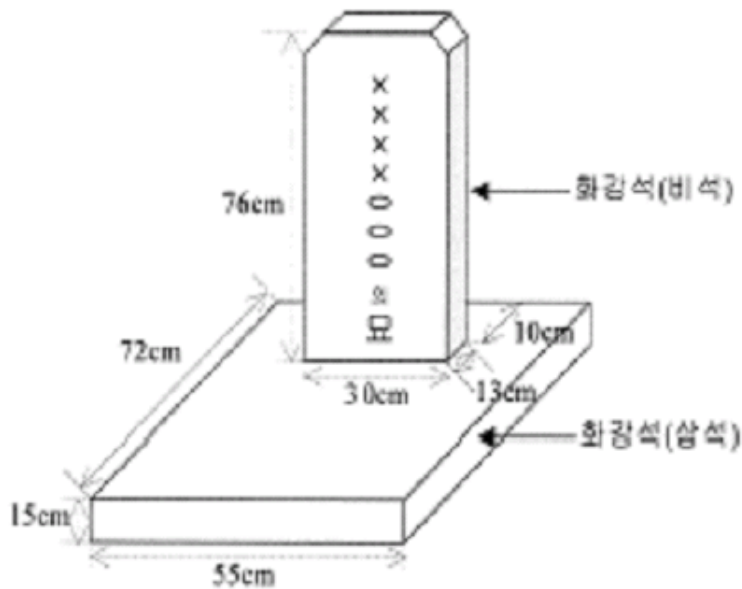
※ 상석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하고, 유족의 희망에 따라 상석(가) 또는 상석(나)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.

다. 묘두릅돌



※ 묘두름돌의 재질은 화강석으로 한다.

3.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묘
가. 묘비의 규격 및 재질



나. 묘비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

- 1) 앞면: 안장자의 신분(계급)과 성명을 새기고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"배위 ○○○" 또는 "부군 ○○○"라고 새긴다.
- 2) 뒷면: 묘지번호, 안장자의 출생일·출생지, 사망일·사망지 및 사망원인을 새기고,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비문 왼쪽에 한 줄로 "배위" 또는 "부군"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새긴다.
- 3) 왼쪽 옆면: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새긴다.
- 4) 오른쪽 옆면: 안장자의 공적사항을 새긴다.

봉안명패의 규격 및 재질 (제6조 관련)

1. 봉안명패의 재질은 세라믹 또는 동판으로 하고, 크기는 가로 14cm, 세로 12cm, 두께 0.5cm 이내로 한다.
2. 봉안명패의 기재내용 및 기재방법은 다음과 같다.

	←	14cm	→	
	사진 (유공자) 5cm × 6cm	사진 (배우자) 5cm × 6cm		↑ 6.5 cm ↓
	육군일병 (0.6cm) 김충성 (1cm) 1929.10.11. 경기 의정부에서 출생 1950.12.25. 강원 철원에서 사망 공적사항	배위 (또는 부군) 이애국 (0.8cm) 1930.1.1. ~ 1999.10.1.		↑ 3.5 cm ↓
	父 ○○○ 母 ○○○ 처 ○○○ 아들 ○○○ 딸 ○○○			↑ 2 cm ↓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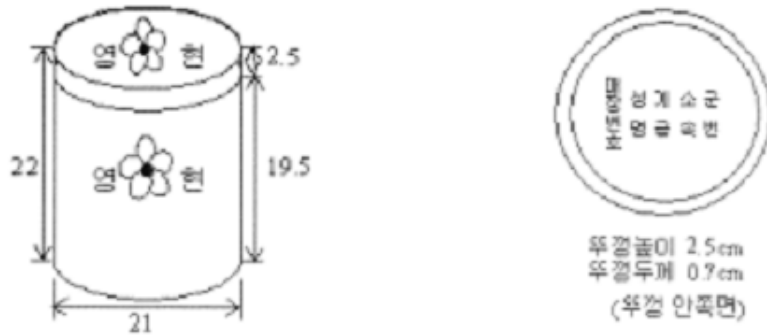
- 가. 봉안명패의 상단에는 안장자의 사진을 넣고, 그 아래에 안장자의 신분 (계급), 성명, 출생일·출생지, 사망일·사망지 및 공적사항을 가로 6줄 이내로 기재한다.
- 나.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안장자의 사진 오른쪽에 배우자의 사진을 넣고, 그 아래에 “배위 ○○○” 또는 “부군 ○○○” 과 배우자의 출생일 및 사망일을 가로 2줄로 기재한다.
- 다. 봉안명패의 하단에는 안장자의 가족사항을 기재한다.

3. 삭제 <2013.1.8>

제 호 유골(시신) 인도 확인서						
안장자	성 명		계 급		군 번	
	주민등록 번호		사 망 연월일		안 장 연월일	
신청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관 계	
	주 소				전화번호	
<p>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족의 신청에 의하여 국립묘지에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유골(시신)의 이장을 위하여 유골(시신)을 인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국립묘지관리소장 직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담당자 : (인)</p>						
※ 위 안장자에 대한 기록은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묘적부에 근거하여 기록한 것입니다.						

210mm×297mm[보존용지(2종) 60g/㎡]

유골함 규격 및 제작방법(제7조 관련)



1. 유골함의 앞면과 뚜껑 표면에는 청색 무궁화를 압입(壓入)하고, “영현”이라 표시하되, 안치용 유골함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2. 유골함의 뚜껑 이면에는 소속, 계급, 군번, 성명, 매장번호 또는 봉안함 번호를 기입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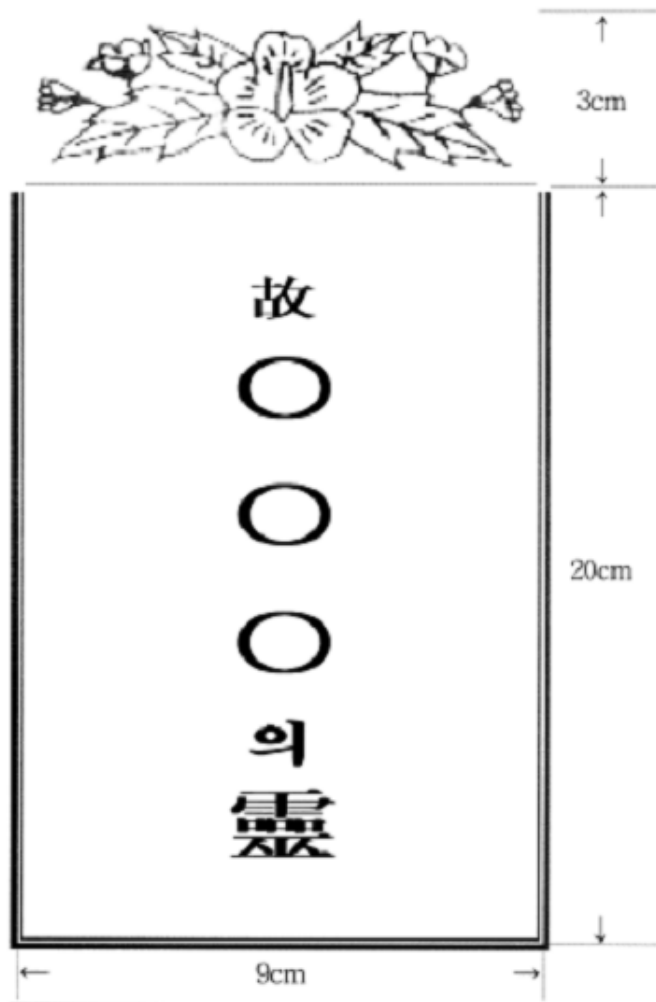
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09.9.9>

유 골 (시 신) 인 수 대 장

접수 번호	접수 일자	성 명	신분/ 계급 · 직위	소 속	군번 (주민등 특번호)	사 망 일	안장 자격	배위 유무	유족			매장/ 안치 번호
									성명 (관계)	주 소	전화 번호	

297 mm×210 mm [신문 용지]

위패지의 규격 및 재질(제9조제1항 관련)



1. 가로 9cm, 세로 23cm의 보존용지를 사용한다.
2. 글자체는 견명조로 진하게 한다.
3. 글자 크기는 '故'자와 '의'자는 1.5cm로 하고, 성명과 '靈'자는 2cm로 한다.

작성자	확인자

요 적 부						
안 장 자	성 명		신 분		계급·직위	
	주민등록 번호		소 속		군 번	
	주 소					
	출 생 지		사 망 지		사 망 일	
	안장자격		훈격·등급		사망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순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사망
	배 우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(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		보훈번호	
	안장위치	<input type="checkbox"/> 봉안당 안치		실	호	종 교
<input type="checkbox"/> 묘지 매장		묘역	호	안 장 일		
<input type="checkbox"/> 위패실 봉안		판	면		호	
배 우 자	성 명		출생일/사망일	/	합 장 일	
유 족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-	안장자와의 관 계	
	주 소					
	변경주소					
	연락처					
참고사항						

210mm×297mm [보통용지(2종) 70g/㎡]

안 장 확 인 서						처리기간 즉시
안 장 자	성 명		신 분		계급·직위	
	주민등록 번호		소 속		군 번	
	주 소					
	사 망 지		사 망 일		사망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전사 <input type="checkbox"/> 순직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사망
	안장자격		훈격·등급		보훈번호	
	안 장 일		배 우 자	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	종 교	
	안장위치	<input type="checkbox"/> 위패실 봉안 판 면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봉안당 안치 실 호 <input type="checkbox"/> 묘지 매장 묘역 판 호				
유 족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안 장 자 와의관계	
	주 소					
신 청 인	성 명		주민등록 번호		안 장 자 와의관계	
	주 소					전화번호
용 도						
위 안장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음을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.						
년 월 일 국립묘지관리소장 직인						
※ 구비서류 유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					수수료 없음
※ 위 안장확인서의 안장자 및 유족의 기록은 「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0조에 따른 묘적부에 근거한 기록입니다.						

210mm×297mm[신문용지 60g/㎡(재활용품)]